

# KO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08784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청룡동) / 전화 02-2015-9816 / 전송 02-886-4314

문서번호 : 교육901 - 503

시행일자 : 2018. 3. 28.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토지관리과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번호				
협조부서				

제 목 : 연수교육 이수기간 산정에 대한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3.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013. 6월)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제4항에서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제4항에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차기 연수교육일자 산정 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중 어떤 교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연수교육대상자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연수교육대상자의 차기 연수교육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안내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수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바, 기간 산정 등과 관련한 주요 민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연수교육 이수시기 기간 산정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1부 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공제가입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87(공제공제 벨리저리)



## □ 연수교육 이수시기 기간 산정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 - 사례 1

- 2015년 : 실무교육 이수
- 2017년 : 연수교육 이수
- 연수교육대상자의 착오 등에 의해 2018년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일자

### - 사례 2

- 2015년 : 실무교육 이수
- 2017년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2017. 11월 ~ 2018. 2월까지 휴업
- 휴업 만료 후 2018. 3월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일자

### - 사례 3

- 2015년 : 실무교육 이수
- 2017년 : 연수교육 미이수
- 2018. 2월 : 연수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처분
- 2018. 3월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일자